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654
----------	-------

발의연월일 : 2025. 10. 21.

발 의 자 : 김영배 · 윤후덕 · 김병주
손명수 · 최혁진 · 김태선
이재강 · 김상욱 · 전현희
이학영 · 한정애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남북협력기금은 단순히 교류가 이루어질 때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남북 간 교류와 협력을 조성하고 그 기반을 마련하는 데 활용되어야 함.

그러나 남북관계 경색이 장기화됨에 따라, 민간단체 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그에 따라 남북협력기금도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또한, 현행 법상 기금 사용 목적이 지나치게 협소하여 남북관계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남북 교류 · 협력의 기반 조성 및 평화통일 기반 구축 등에도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외적 요인으로 경협사업이 중단된 경우 경협보험 또는 교역보험에 가입된 자를 대상으로 피해보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남북협력기금이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

고 남북관계 개선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8조 제2호 등).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협력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 중 “환경”을 “기후, 환경”으로, “체육”을 “문화유산, 체육”으로, “해양수산”을 “산림, 해양수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지원”을 “지원(다만, 제4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한 자에 한정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의2 및 제6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제8호 및 제9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남북 당국의 조치에 의하여 교역 및 경제 분야 협력사업이 일정 기간 동안 정지되어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다만, 제4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한 자에 한정한다)

6의2.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의 민간단체에 대한 사업 및 활동의 지원(지원 절차, 기준 등은 통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7.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따라 설치된 비무장지대 및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에서 추진하는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는 사업의 지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8조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제8조(기금의 용도)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u>환경</u> , 통계, 학술, 과학기술, 정보통신, 문화, <u>체육</u> , 관광, 보건의료, 방역, 교통, 농림축 산, <u>해양수산</u> 분야 등의 협력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	2. <u>기후, 환경</u> ----- ----- <u>문화유산, 체육</u> ----- ----- -- <u>산림, 해양수산</u> ----- ----- -----
3. 교역 및 경제 분야 협력사업 을 촉진하기 위한 보증 및 자 금의 융자, 그 밖에 필요한 <u>지원</u>	3. ----- ----- ----- <u>지원(다만, 제4호에 따른 보 험에 가입한 자에 한정한다)</u>
<u><신 설></u>	<u>3의2. 남북 당국의 조치에 의하 여 교역 및 경제 분야 협력사 업이 일정 기간 동안 정지되 어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다만, 제4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한 자에 한 정한다)</u>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u><신 설></u>	<u>6의2.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u> <u>기 위한 목적의 민간단체에</u> <u>대한 사업 및 활동의 지원(지</u> <u>원 절차, 기준 등은 통일부장</u> <u>관이 정하여 고시한다)</u>
<u><신 설></u>	<u>7. 1953년 7월 27일 체결된</u> <u>「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u> <u>따라 설치된 비무장지대 및</u> <u>「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u> <u>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에</u> <u>서 추진하는 남북교류·협력</u> <u>을 촉진하는 사업의 지원</u>
<u>7.·8. (생 략)</u>	<u>8.·9. (현행 제7호 및 제8호와</u> <u>같음)</u>